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 피해자 주거이전 지원〉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385)

202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 및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반면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현행법은 제20조제6항에 신변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성폭력 피해도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이 역시 ‘중대한 위해 혹은 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연구> 역시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여성의 거주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남한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사회와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수임.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및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인 보호대상자와 ②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보호대상자가 주거 이전을 요청할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이 주거이전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 (생략)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통일부장관은 <u>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u>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신설>	1. <u>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u>
<신설>	2. 「 <u>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u>성폭력피해자인 보호대상자가 그 신변안전을 위하여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u>
<신설>	3. <u>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u>

⑦ (생 략)	<u>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보호대 상자가 주거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u>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현행법은 제20조제6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라 2022년 이후 통일부가 주거이전 지원한 사항은 1건 있고, 2022년 이후 수해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 변경 등 3건의 주거이전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비보호자, 주택상실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주거보호와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시설을 운영 중임.

＜ 북한이탈주민 주거이전 지원 사례 ＞

구분	대상자	위기 상황	조치 결과
신변위해	손○○ (85년생, 女)	지인 탈북민 스토킹으로 인한 주거이전 요구('22.2.27.)	하나재단 지원 '쉼터'(수원소재) 임시 입주조치(3.4) * 가해자 방○○이 '22.5월 사망(급성심근경색), 신변위협 상황 종료
침수피해	이○○ (71년생, 女)	'22.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자택 침수 피해	관할 지자체(영등포구) 협조, 임시주택 입주조치(대림동, 8.16.) 후 LH 장기임대주택(빌라)으로 입주('23.1월)
침수피해	김○○ (74년생, 女)	'22.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자택 침수 피해	관할 지자체(동작구) 협조, SH 장기임대주택(아파트) 입주('22.10월)
침수피해	허○○ (54년생, 女)	'22.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자택 침수 피해(폭우 피해 당시 입원치료 중)	관할 지자체(영등포구) 협조, 단기 쉼터 입주('22.9월)

자료: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 제20조제6항1)의 요건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성폭력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써,

국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고 상당수가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거주지 이전의 제약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

1) 현행 제20조제6항의 당초 입법취지는 해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북한의 테러 등을 통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할 때 개정안처럼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해 주거이전의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안 제20조제6항제2호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접적인 성폭력피해자인 보호대상자에게 주거이전의 지원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인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현행 규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20조제6항제3호의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주거이전의 지원을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안 제20조제6항제3호)를 지원 요건으로 하는 경우,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① 통일부는 안 제20조제6항제3호에 따른 ‘성폭력 등 신변안전 우려’를 사유로 한 주거이전 지원의 경우는 ‘신변안전 우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주거이전의 사유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② 법무부는 주거이전의 지원 요건을 ‘성폭력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주거이전의 사유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여성가족부는 동 개정안 취지에 찬성하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도 거주 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267